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24
------------	-------

제출년월일 : 2018. 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3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로 변경

나. “2018년 5월 30일”을 “2023년 5월 30일”로 개정(제5조의2)하여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8. 3. 2. ~ 2018. 3. 22. (의견제출 없음)
- 2)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원안 동의
- 3)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 없음
- 4) 재정계획 심사 결과 : 적정
-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2018.03.29.)
-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7)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로, “2018년 5월 30일”을 “2023년 5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 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p> <p>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u>201</u> <u>8년 5월 30일</u>까지로 하되, 구청 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 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p> <p>제4조----- ----- 2023</p> <p>년 5월 30일----- ----- ----- ----- ----- -----.</p>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운영을 하고자 개정 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이승익
연락처	02-3153-8805